

2022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공고

1. 사업목적

- 지역에서 활동 중인 창작자에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 기여
-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 및 지역예산으로 운영되는 영화관련 단체와의 예산매칭을 통하여 지역 영상생태계 육성 기반 확대
-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영상문화·산업 균형발전 도모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개요

-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지원금 : 343,000,000원(3억 4천 3백)
- 사업기간 : 2022.05 ~ 2022.12
- 기획개발 : 장편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한 트리트먼트 및 시나리오 개발비 편당 최대 1,000만원 지원
- 제작지원 : 제작 및 후반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장편 편당 최대 7,000만원, 단편 편당 최대 700만원 지원

나. 신청자격

-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지역
-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의 경우, 지역 기관(단체)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순제작비 10억미만 작품
※ 제작지원 단편의 경우, 예산매칭 조건 제외(개인 신청 가능)
- 지역기관(단체) 및 지원금 자격요건
 - ① 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> 제28의4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 영상위원회 중, 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(예산 및 사업집행력)을 갖춘 곳. 단, 기초단체 단위로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어있는 경우, 소속 광역 지자체 전체를 포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
 - ②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, 지자체 산하기관 및 지역예산으로 운영되는 영화관련 단체 중 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(예산 및 사업집행력)을 갖춘 곳※ 지역에서 지원금을 매칭하는 자금의 출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한 공적자금 및 지역 내에서 지원받는 공익적 성격의 지원금을 포함. 단, 투자 및 개인적 지원(자체조달, 자부담)은 불인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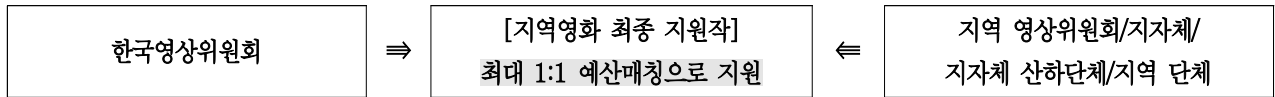
다. 사업주체 역할 및 연계 추진방안

- 사업주체 역할
 - ① 한국영상위원회
 - 사업총괄 집행 및 정산 : 사업예산의 총괄 집행 및 정산, 선정작품에 대한 지원금 지급
 - 지원작 최종선정 : 지역영화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지원 타당성 여부 검토, 지원결정
 - 홍보 및 지원작에 대한 모니터링, 리스크 관리

② 지역 영상위원회/지자체 산하단체/지역 영화관련 단체

- 지원사업 진행 : 사업참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역기반 작품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
- 지원작 1차 작품선정 : 지원 대상 작품선정을 위한 제반절차(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) 진행. 1차 선정 후 한국영상위원회에 최종선정을 위한 심의 요청
- 지역 홍보 및 지원작에 대한 모니터링, 리스크 관리 협조

■ 사업연계 추진방안



단계	개요	내용	담당
1단계	사업방향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기준, 절차 등 설계 ▪ 심사위원회 구성안 작업 진행 	한국영상위
2단계	사업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영화/개인(단편) 대상 홍보 진행 	한국영상위
3단계	지원작 공모 및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부문별 한국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- 기획개발 및 장편 : 지역별 지역영화 선정작 / 단편 : 개인(예산매칭 예외) 	지원 신청작
4단계	지원작 최종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지원 작품 선정(매칭지원금 결정) 	한국영상위
5단계	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종 선정작에 대한 약정체결 진행 -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 : 3자 약정체결 - 제작지원 단편 : 2자 약정체결 ▪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최종 확인 후 지원금 지급 	한국영상위 지역영상위/지자체 지역 단체(개인 단편)
6단계	지원작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작들의 제작 진행 모니터링 및 중간보고 ▪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작 지원금 집행현황 관리 	한국영상위
7단계	제작완료 및 결과보고(지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원작 제작 완료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완료 ▪ 지원금 집행에 대한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	지원작
8단계	최종정산 및 결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종결과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제출 	한국영상위 지역영상위/지자체 지역 단체

라.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2.06.01.(수) ~ 2022.06.28.(화) 14시 59분
- 접수기간 : 2022.06.15.(수) ~ 2022.06.28.(화) 14시 59분
 - ※ 14시 59분까지 접수가능하며 15시 정각에는 접수 불가능함
 - ※ 접수마감일 다수 인원 접속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접수할 것을 권장함.
- 최종 지원작 선정 발표일 : 2022.07월 말 예정 (※ 7월 내, 선정자 대상(필참) 사업설명 및 협약 진행 예정)
- 접수방법 : 한국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지원신청 페이지 온라인 접수(www.kfcin.or.kr)
- 세부 제출 신청서류 : 사업공고 4페이지 참고(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마. 신청 및 접수 시 유의사항

- 1인(사) 당, 모든 지원 부문에 총 1작품만 접수가능(※ 동일한 신청자(사)에 의해 2개이상 접수시 접수작품 전체 제외)
- 첨부서류 온라인 제출 시, 각 파일은 최대 5MB까지 첨부가능하며 PDF만 업로드 가능함
 - 파일명 : [작품명] 첨부서류명 (예. [기생충] 예산내역서 / [매칭기관명] 예산매칭 신청서 및 협약서)
 - PDF 변환 시, 1페이지에 2쪽 변환 금지하며 변환한 파일 확인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사업 추진 세부내용

□ 공통사항

- 지역 내 창작자 및 지역 인력 조건 관련(서울 제외) : 거주지와 활동지가 다른 경우, 활동 지역에서의 지속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(지역단체 회원등록증, 경력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

□ 지역영화 지원조건 : 지역 창작자이며, 지역기관 및 단체 예산지원이 결정된 작품(단편은 예산매칭조건 제외)

- 기획개발 부문

※ 신청자격

① 지역 내 창작자(필수)

- 작품의 창작자(감독 또는 작가)가 지역 거주(활동)자일 것

② 지역 소재(선택사항으로 소재 포함할 경우 심사평가 시, 전체배점 중 20%범위 내에 가산점 부여)

- 지역의 소재(배경 포함)로 장편 영화를 기획중인 자

- 제작지원 부문

※ 장편 및 다큐멘터리 부문 신청자격 - 아래 3가지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며,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작품

① 지역 내 창작자

- 작품의 창작자(감독 또는 제작자)가 지역 거주(활동)자일 것

② 지역 인력

- 지역에서 거주(활동) 중인 자의 전체 스태프 구성 비율이 30% 이상일 것

③ 지역 소재 또는 지역 촬영

- 시나리오 상 지역적 요소가 주요한 모티브 또는 이야기 구성 요소이거나, 씬/회차 기준으로 지역 내 로케이션 촬영이 30% 이상일 것

※ 단편 부문 신청자격 - 아래 3가지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작품. 단, 단편의 경우 예산매칭조건에서 제외

① 지역 내 창작자

- 작품의 창작자(감독 또는 제작자)가 지역 거주(활동)자일 것

② 지역 인력

- 지역에서 거주(활동) 중인 자의 키스태프 구성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, 전체 스태프 구성 비율이 40% 이상일 것

[키스태프의 정의]

- 시나리오 작가, 조감독, 촬영감독 및 1st급 조수, 조명기사, 미술감독, 녹음기사, 애니메이터, 편집기사, D.I.기사(업체 소재지 기준), 사운드 믹싱(업체 소재지 기준), VFX 및 C.G.(업체 소재지 기준) 등. 단, 지역 인력 비율에 배우는 포함하지 않음

③ 지역 소재 또는 지역 촬영

- 시나리오 상 지역적 요소가 주요한 모티브 또는 이야기 구성 요소이거나, 씬/회차 기준으로 지역 내 로케이션 촬영이 30% 이상일 것

□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및 평가기준(안)

▪ 작품선정 심사 계획

- 심사위원회 구성 : 영화 및 지역 문화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국영상위원회 자체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제작지원 단편 3인,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 3인으로 구성

▪ 지역영화 선정기준 및 방식

- 선정방식 : 제출서류 심사 1회 진행(필요시, 추가로 심사진행 할 수 있음)
- 선정기준 : 동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작품의 완성도 및 제작가능성 등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하여, 지역 영상생태계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
- 기획개발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제출된 기획안의 완성도 및 제작 가능성, 신청인의 지역 내 활동 경력, 지역 내 제작 및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
- 제작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지역 내 활동경력, 인력구성 비율, 시나리오(구성안)의 창의성 및 독창성 등 작품의 완성도, 제출서류준비 및 촬영계획의 성실성(제작의 준비도)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

□ 세부 제출 신청서류

- 제출방법 : 한국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지원신청 페이지 온라인 접수(www.kfcin.or.kr)

※ 위원회 접수서류(양식)는 사업 공지사항 또는 신청서작성 진행시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
※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의 경우, 예산매칭기관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취 후 온라인 접수 시, 직접 제출함

※ 신청서에는 본명 기입이 원칙이며, 제출서류에 필히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함(활동명 및 필명은 별도작성)

※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자는 온라인 접수 후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→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온라인 업로드 제출 불가 / 담당자 jenny@kfcin.or.kr

- 주민등록초본 : 과거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이상 포함하여 발급(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필수)

- 활동증명서 : 활동기간 명시

신청자 공통제출 자료(해당하는 지역영화 조건인 경우) -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별도제출	
<p>[지역 내 창작자] 지역 거주사실 증명서(주민등록초본 제출/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불가) 또는 활동증명 (영화관련 단체 회원 증명서, 지역영화 참여확인증, 재학증명서 등)</p> <p>[지역 인력] 접수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지역 거주사실 증명서(주민등록초본 제출/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불가) 또는 활동증명서(영화관련 단체 회원 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</p> <p>[사업자 신청시] 사업자등록증</p>	
기획개발 부문	제작지원 부문
<p>1. 예산매칭기관의 예산지원을 증빙하는 서류(입금내역 통장사본, 약정서 등)</p> <p>2. (가) [극영화] 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(나) [다큐] 기획구성안,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, 세부일정(자유양식)</p> <p>3. 기획개발 계획서(소정양식 각 1부) · 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</p>	<p>1. 예산매칭기관의 예산지원을 증빙하는 서류(입금내역 통장사본, 약정서 등/단편 제외)</p> <p>2. (가) [극영화] 시나리오 (나) [다큐] 기획구성안 자료조사 및 취재내용, 세부일정(자유양식)</p> <p>3. 포트폴리오 1편(유튜브, 비메오, 구글 링크 제출/신청인이 포함된 작품이어야 하며, 뮤직비디오 및 동영상 제출 불인정) → <u>없는 경우 제외가능</u></p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체 구성원 리스트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 · 예산내역서 <p>4. 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(소정양식)</p>	<p>4. 제작계획서(소정양식 각 1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저작권(판권) 소유확인서 · 전체 구성원 리스트 및 지역 내 활동 내역서 · 지역 촬영 계획서 · 지역 인력 추가 고용계획 및 작품활용 계획 · 예산내역서 <p>5. 성범죄·성희롱 사실확인서(소정양식)</p>
<p>예산매칭기관 공통제출 자료 -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에 해당</p>	
<p>1. 기관작성용 예산매칭 신청서 및 예산매칭 협약서(소정양식)</p> <p>※ 해당자료는 예산매칭기관에서 작성 후, 동사업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신청자가 온라인 접수시 첨부함</p> <p>2. 사업자등록증 → 정보보호에 따라 온라인 업로드 제출 불가 / 담당자 jenny@kfcin.or.kr</p> <p>※ 해당자료는 동사업 신청자가 예산매칭기관에서 직접 수취 후,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별도제출</p>	

□ 주민등록초본 발급 참고사항

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with three main sections:

-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.** (Select recipients): Radio buttons for '본인' (Selected) and '다른 세대 구성원'.
- 발급형태를 선택해 주세요.** (Select issuance type): Radio buttons for '발급' and '선택발급' (Selected).
- 표시할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.** (Select information to display): A red box highlights the following options:
 -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
 - 전체 포함 직접입력: 최근 [] 년 포함 (예, 최근 5년 포함)
 - 세대주 성명/관계 발생일/신고일 변동사유
 -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
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 - 병역사항
 -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
□ 지급조건 및 지원금 사용범위

가. 지급조건

▪ 제출서류

- 매칭기관(지자체 또는 지역 영상위원회 등)의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자료 또는 지원금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입금내역 통장사본 또는 지원결정 통지서, 약정서 등 제출하며 **차년도 지원금 지급 확정건은 제외함/해당조건은 제작지원 단편 제외임**)
- 기타 필요로 요청하는 서류(착수보고서,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등)

▪ 지원금 집행 및 정산

-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을 통해 집행, 관리하여야 함(모든 지원부문은 시스템을 통한 지원금 집행이 원칙이며, 시스템 사용 교육참석은 필수임. 단,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자 담당자에게 교육방식 등 세부사항 개별통보 예정)

▪ 약정기간

- 1) 약정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(지원금 집행마감 2022.11.30./지원금정산 및 보고서제출 2022.12.31.까지 완료하여야 함)
- 2) 제작연장 : 1회에 한하여 장편 극영화 3개월, 다큐멘터리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. 연장 시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(지원금 사용연장은 불가능, 제작연장만 가능/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단편은 연장 불가능)

▪ [지원작] 정산서류 제출

- 1) 기획개발 : 초고 이상의 시나리오, 'e나라도움' 정산완료(결과 및 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자료 업로드)
- 2) 제작지원 장편/단편: 완성작 동영상 파일(크레딧에 지원기관 및 지원사실 명시), 'e나라도움' 정산완료 (결과 및 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자료, 전체촬영일정표 업로드), 회계검토보고서(지원금 2천만원이상 해당)

▪ [매칭기관] 정산서류 제출

- 1)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 : 매칭지원금이 최종 완료되었다는 내용 공문 1부, 정산서류 일체 제출
* 예산매칭기관 사업담당자가 동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 제출

※ 2022년 12월 내 매칭지원금 정산완료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, 사유 및 제출가능 기한을 포함한 공문으로 대체

나. 지원금 사용범위

구분	기획개발	제작지원
사용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비(차량)수리 및 장비구입(예. 카메라/렌트카 등) - 자가시설 이용료 -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 - 홍보비, 사우나 - 주류(호프, 이자까야, 술집 등) 유흥업소 - 통신비(휴대폰 요금, 사무실 전화요금) - 기타 기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 - 간이영수증/현금영수증 불인정/사후환급(정산) 금지 - 해외결제 금지, 외장하드 구매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비(차량)수리 및 장비구입(예. 카메라/렌트카 등) - 자가시설 이용료 -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 - 주류(호프, 이자까야, 술집 등) 유흥업소 - 사우나 - 통신비(휴대폰 요금, 사무실 전화요금) - 기타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 - 간이영수증/현금영수증 불인정/사후환급(정산) 금지 - 해외결제 금지
사용가능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인력 인건비 및 원천세액(의무사항), 예술인 고용 보험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(선택사항) - 회의비(회의록, 인터뷰 내용 첨부) - 자료수집(지문확인서, 구매계획서 및 목록 첨부) - 도서자료구입(자료에 맞는 도서 및 DVD) (※ 연극, 영화, 뮤지컬 관람불가) - 교통비 및 유류비(장소답사, 지방취재, 자료수집 등 관련업무) - 복사, 인쇄, 문구류 구매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태프 인건비 및 원천세액(의무사항), 예술인 고용 보험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(선택사항) - 촬영 재료비, 장비/미술/소품/의상/분장 등 대여비 - 숙박비, 식비, 부식비 등 - 편집, 녹음, CG, 색보정, 자막 등 - 교통비 및 유류비, 주차비, 자동차 렌탈비 등 - 복사, 인쇄, 문구류 구매 등 - 총 30만원 이하의 이동식저장매체 구매(외장하드 등) - 회계검사비용(지원금 2천만원 이상 작품에 해당)

- 지원금 인건비 집행비율
 - 기획개발 : 최대 80%
 - 제작지원 : 단편, 다크 최대 80% / 장편 극영화 최대 60%
 - 필수조건 : 인건비 집행 시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, 원천세 신고 필수
 - ※ 시급(1시간 기준) : 2022년 9,16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: 1,914,440원

다. 지원금 지급방식 및 정산방식

- 지원금 지급방식 (※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시 하단 파일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함)

공통사항		
<p>※ e나라도움 시스템 예약계좌에 지원금 교부</p> <p>※ 지원대상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금 집행</p> <p>[지원금 지급 횟수]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단편 : 지원금 일시불 지급 제작지원 장편 : 지원금 2,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2회에 나누어서 지급(1회 50%, 2회 50%)</p> <p>[회계검사] 지원금 2,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안내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검사를 받아야 함</p> <p>[약정체결]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장편 3자 체결(한영위-지원자-매칭기관) 제작지원 단편 2자 체결(한영위-지원자)</p> <p>[중간보고서 제출] 한국영상위에서 별도로 요청 시, 제출기한 내 제출. 단, 제작지원 장편 중 지원금 2,000만원 이상인 작품은 2차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중간보고서 제출하여야 함</p>		
구분	기획개발	제작지원
제출 서류	<p>[개인 신청인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착수보고서(계획서 및 예산서 등) - '매칭기관' 지원금 지원확정 또는 입금내역 증빙자료 -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및 사업비 교부신청 	<p>[개인 신청인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착수보고서(계획서 및 예산서, 최종 시나리오, 기획구성안 등) - '매칭기관' 지원금 입금내역 또는 지원확정 증빙자료(단편제외) -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및 사업비 교부신청
	<p>[사업자 신청인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착수보고서(계획서 및 예산서 등) - '매칭기관' 지원금 지원확정 또는 입금내역 증빙자료 -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및 사업비 교부신청 	<p>[사업자 신청인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착수보고서(계획서 및 예산서, 최종 시나리오, 기획구성안 등) - '매칭기관' 지원금 입금내역 또는 지원확정 증빙자료(단편제외) - 'e나라도움' 사업등록 및 사업비 교부신청

- 지원금 정산방식
 - 총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을 통해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, 결과 및 정산보고서, 지출 증빙자료, 전체촬영일정표, 회계검토보고서(지원금 2천만원이상 해당)는 모두 'e나라도움'에 업로드 하여야함. 결과물(시나리오, 영상물)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 -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, 희망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회계법인에 인건비 원천세는 필수로 신고해야 하며, 원천징수 후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원칙임. 단,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공간 및 장비 등 대여 후 대여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나, 회계법인에 원천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함
 - * 증빙서류 :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, 계약서, 원천세 납부 영수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

4. 신청 및 심사제의 대상

- 지원사업 중복접수 불가
 - 신청일 현재 동사업에 지원받는 중 이거나,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(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,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등)에 진행 중인 작품 및 지원대상자, 제작사 제외(※ 결과물, 정산자료 제출 및 반환금 상환까지 완료되고, 사업담당자로부터 사업종료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지원가능/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작품담당자에 해당됨)
 - 동일한 작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개발 또는 제작지원(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,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)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은 동일항목 지원부문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(※ 예. 2017년 작품명 '△△' 으로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, 동일한 작품 '△△'으로 2021년 한국영상위원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에 동일항목인 기획개발 부문 지원 불가)
 - 신청일 현재 동사업의 정산은 완료하였으나 매칭기관의 지원금 집행 및 영상물 제작연장으로 매칭금에 대한 정산보고가 한국영상위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, 사업종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해연도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
 - 신청일 현재 동사업의 정산은 완료하였으나, 영상물 제작연장 신청 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(사)는 사업종료로 인정되지 않으며, 당해연도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
 - 신청일 현재 동사업의 최종 사업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작품으로 당해연도 사업신청 할 경우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
 - 지역영화 지원조건에 부적합하거나,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
 - 1인(사) 당, 모든 지원부문에 총 1작품만 접수가능(※ 동일한 신청자(사)에 의해 2개 이상 접수 시, 접수작품 전체 제외)
 - 국고 및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작품 제외
 -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(대표), 배급사(대표), 감독, 개인은 접수 불가
 -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(대표), 배급사(대표), 개인, 감독은 지원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 후 접수 가능
 - 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> 제3조의8에 의거, 동 사업에 신청하는 제작사 또는 영화단체가 영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제3조의4에 의거 근로계약 체결 시,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매칭기관(지역영상위/지자체/지역단체)에서 접수한 작품 중 당해연도 매칭금(지원금)교부가 아닌 차년도 지원금 교부건은 동 사업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신청자(사)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받은(성폭력범죄자) 경우 심사에서 제외
 - 신청자(사)가 성폭력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
- ※ 지원대상 작품으로 확정되어,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,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작품에 대한 지원결정 취소 및 보조금을 회수하며,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※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히,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요망
- ※ **[지원사업 중복지원 예외]** 동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단편영화 선정작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지역 제작지원 사업에 추가지원을 받아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음

5. 지원금 취소 및 환수

□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(지원결정 취소) 및 제재조치

-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
 -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지원금 교부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(착수보고서 미제출 등)
 - 약정체결 이후 약정체결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(결과 및 정산보고서, 결과물 미제출 등)
 - 동사업의 지원금 외 타기관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중복수급한 경우
 - 시나리오 기획개발 또는 영화 제작을 중도 포기한 경우
 -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로 사업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
 - 지원대상자의 저작권 및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된 경우
 - 예산매칭기관으로부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
 - 지원대상자가 지역영화 지원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
 -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거나, 성폭력 수사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추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
 -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(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,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)를 위반한 경우
-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제재조치
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,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반환을 명령할 수 있음.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 및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. 해당 조치에 대한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며, 문화부 자체 심의회에서 결정 후 통보예정
 - 제재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추후 한국영상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(적용대상 : 제재조치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및 업체, 개인이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인 경우)

6. 기타 의무사항

□ 기획개발 및 제작 진행상황의 보고 등

- 기획개발 및 제작 진행에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,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 당초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4조(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) “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” 지원대상자의 휴폐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신용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며,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함
- 위원회는 기획개발 및 제작상황을 점검하고,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(경우에 따라 제3자에게 의뢰)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자의 성범죄 예방 의무

- 신청대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, 성희롱·성범죄 사실확인서(소정양식)를 제출하여야 함
- 신청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거나,

성폭력 관련 수사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추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작품으로 선정되어도 취소될 수 있음

-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후 제작참여자 전원이 “성범죄·성희롱 예방교육”을 수강하여야 하며, 기획개발 및 제작기간 중 성범죄·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, 감독을 다짐하는 서약서(소정양식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□ 아동청소년 인권보호의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,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별도로 배려를 하여야 하며,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(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,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)를 위반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관리 의무

- 지원대상자는 영화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,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함. 경우에 따라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,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

□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
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근거하여,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또는 한국영상위원회가 별도 양식을 만들어 자료를 요청할 때,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지원대상자는 완성된 작품에 위원회의 지원사실을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

<p>2022년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</p>	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
	 (사)한국영상위원회 Korea Film Commissions & Industry Network

- 향후,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홍보 및 연구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있음

□ 정보공시
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근거하여, 총 지원금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차기년도 4월까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‘e나라도움’에 공시하여야 함

□ 문의처 : <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> 사업담당자 E-mail) jenny@kfcin.or.kr